

문서 번호	DSF-003
최종수정일	2026.01.14
페이지	Page
담당 인원	총괄 이재호

(주)대성화스너 협력사 행동규범

목 차

1. 개요	4
가. 행동규범 목적	4
나. 행동규범 대상	4
다. 협력사 책임과 역할	4
2. 윤리	5
가. 투명경영 및 반부패	5
나. 이해상충 방지	5
다. 불공정 거래 방지	5
라. 위조부품 방지	5
마. 수출제한 및 경제재재 준수	5
바. 정보보호	5
사. 지적재산 보호	6
아. 책임 있는 자재 구매	6
3. 환경	7
가. 환경경영시스템 구축	7
나.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7
다. 수자원 관리	7
라. 대기오염물질 관리	7
마. 순환자원 및 폐기물 관리	7
바. 화학물질 관리	8
사. 동물복지	8
아. 생물다양성 보호와 산림파괴 금지	8

목 차

4. 노동/인권	9
가. 아동노동 사용 금지	9
나. 강제노동 사용 금지	9
다. 차별 및 괴롭힘 금지	9
라. 임금 및 복리후생 제공	9
마. 근로시간 관리	9
바. 인도적 대우	9
사. 결사의 자유 보장	10
아. 윤리적인 채용	10
5. 안전/보건	11
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11
나. 기계 · 기구 · 설비의 안전 관리	11
다. 비상상황 대응	11
라. 사고 관리	11
마. 안전 진단	11
바. 보건 관리	12
사. 수급인의 안전 및 보건	12
6. 경영시스템	13
가. 기업성명서 공시	13
나. 담당자 선임	13

목 차

다. 리스크 점검	13
라. 교육 및 소통	13
마. 정보 관리	13
바. 고충처리 제도 운영	13
사. 구제수단 마련	13
아. 거래업체(하위 협력사) 관리	14
자. 규범 준수	14
7. 공급망 실사	15

1. 개요

가. 행동규범 목적

대성화스너는 윤리적이고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 본 행동규범을 제정하였으며, 본 행동규범은 대성화스너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거나, 기타 거래를 위해 계약을 체결한 국내외 협력사(이하 “협력사“)에게 기업경영 활동에 적용되는 모든 법령(부패, 경제제재, 강제노동, 안전/보건 및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음)을 철저히 준수함과 동시에 윤리, 환경, 노동/인권,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분야에서 최선의 운영관행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성화스너는 협력사를 포함한 공급망 전반이 본 행동규범을 준수하여 사회로부터 더욱 존경받는 기업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상호 동반성장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나. 행동규범 대상

협력사는 본 행동규범을 준수해야 하며, 본 행동규범의 적용 대상인 협력사는 거래업체(하위 협력사)등 공급망 전반이 본 행동규범에서 제시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해야 합니다.

다. 협력사 책임과 역할

대성화스너의 협력사는 경영의사결정 및 사업운영과정에 있어 본 행동강령이 제시하는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성화스너 및 대성화스너의 위탁을 받은 제 3자 기관은 협력사가 본 행동규범이 제시하는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점검 및 실사할 수 있습니다. 본 행동규범 준수에 대한 점검 및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성화스너는 확인된 리스크에 대한 개선을 권고 할 수 있으며, 협력사는 개선사항에 대해 상호협의를 바탕으로 리스크 완화계획 수립 및 이행조치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본 행동규범은 협력사의 이행 의무사항을 모두 명시한 것은 아니며,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 본 행동규범은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보완 및 개정될 수 있습니다. 본 행동규범은 대성화스너 담당부서를 통해 본 행동규범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성화스너는 협력사의 구성원이 본 행동규범과 관련된 정보를 편리하게 접근 할 수 있는 최적의 방식을 이용하여 협력사가 본 행동규범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협력사가 거래업체(하위 협력사)등 공급망 전반에 본 행동규범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2. 윤리

가. 투명경영 및 반부패

협력사 임직원은 청렴성 기준 및 법령을 준수하고, 업무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뇌물수수, 공갈, 횡령, 알선, 청탁, 자금세탁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약점이나 흠결 등을 이용하여 부당한 대가를 의도해서도 안 됩니다.

나. 이해상충 방지

협력사는 정해진 업무규정에 따라 책임의식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해야 하며,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익을 목적으로 기타 수단을 약속·제안·허가·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다. 불공정 거래 방지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각 국가별 공정거래 관련 법령 및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협력업체에 지급하기로 한 대금을 결제일에 지급하여야 하며, 다른 사업자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 해서는 안 됩니다. 협력사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획득하지 않으며, 회사 또는 제 3자가 부당하게 획득한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라. 위조부품 방지

협력사는 승인되지 않은 원재료 및 부품 등을 생산, 사용해서는 안 되며, 위조된 원재료 및 부품 등을 사용,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마. 수출제한 및 경제제재 준수

협력사는 수출제한 및 경제제재와 관련한 국가별 법령 및 국제적 규약을 준수하고, 수출제한, 경제제재에 해당하는 국가, 지역, 법인, 단체, 개인 등과 거래해서는 안 됩니다.

바. 정보보호

협력사는 고객사 및 거래업체(하위 협력사)의 영업비밀이나 보안을 요하는 정보를 무단 유출하지 않으며, 업무 수행 시 취득한 정보는 사전허가 및 승인없이 보관 및 사용해서는

2. 윤리

안 됩니다. 협력사는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과 보유 및 이용 기간 등에서 일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사. 지적재산 보호

협력사는 고객사 및 거래업체(하위 협력사)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존중해야 하며, 협력사가 보유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아. 책임 있는 자재 구매

협력사는 공급망 내 어떠한 단계에서 대성화스너에 납품되는 물품의 제조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 되는 원재료, 부품 및 구성품을 조달하는 국가 및 지역을 확인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하며, 강제노동을 이용하여 제조한 원재료, 부품 또는 구성품을 공급받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3. 환경

가. 환경경영시스템 구축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환경 관련 법령 및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사업 운영에 필요한 모든 환경 관련 인허가를 취득·유지하고, 환경경영시스템¹을 운영해야 합니다.

나.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협력사는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감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다. 수자원 관리

협력사는 수자원 사용량 및 폐수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수자원 사용량 절감 및 재활용량 증대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은 법적 기준 혹은 그 이상의 내부 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합니다.

라. 대기오염물질 관리

협력사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법적 기준 혹은 그 이상의 내부 기준을 수립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마. 순환자원 및 폐기물 관리

협력사는 폐기물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매립, 소각되는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폐기물 재사용, 재활용을 확대하고, 폐기된 원재료 및 부품 등을 회수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생산하는 제품의 전체 수명주기를 고려하여 폐기물의 매립, 소각 시 환경영향을 미치는 잔유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¹ ISO14001 표준 등 (ISO14001 표준은 기업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지속적 환경성과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환경경영시스템(EMS)에 관한 국제 표준으로, 해당 표준에 적합하고 환경경영을 수행하고 있는지 제 3자 기관을 통해 인증 받을수 있음

3. 환경

바. 화학물질 관리

협력사는 사업 운영 과정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화학물질의 위해성 및 유해성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표기하거나 공개하고, 원재료 및 부품 등에 인체 또는 환경에 유해한 물질² 이 포함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사. 동물복지

협력사는 불가피하게 사업상 동물실험을 수행해야 할 경우 동물보호법 제 23조(동물실험의 원칙)를 준수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세계동물보건기고(WOAH)가 정한 동물의 5대 자유를 존중해야 합니다.

- ▶ 배고픔과 갈증으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hunger or thirst)
- ▶ 불편함으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discomfort)
- ▶ 통증, 부상, 질병으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pain, injury or disease)
- ▶ 정상적인 행동표현의 자유(Freedom to express (most) normal behavior)
- ▶ 공포와 스트레스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fear and distress)

아. 생물다양성 보호와 산림파괴 금지

협력사는 사업활동이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및 의존도를 측정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 감소, 상쇄하기 위한 전략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협력사는 사업활동으로 인한 잠재적 산림파괴 리스크 발생가능성을 점검할 수 있는 절차를 구축하고, 산림파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² EU, 전기전자제품 내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RoHS), (2006)에 관한 사항 등

4. 노동/인권

가. 아동노동 사용 금지

협력사는 관련 법령에서 허용되는 것이 아닌 한, 모든 사업장에서 어떠한 형태의 아동노동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무관용 원칙을 고수해야 하며, 아동노동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거래업체(하위 협력사)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지 않아야 합니다.

나. 강제노동 사용 금지

협력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이나 임직원 의사에 반하는 의무적 근로를 금지해야 하며, 공급망 내 어떠한 단계에서도 강제노동의 사용을 금지한다는 입장이 명시된 행동규범을 제정해야 하며, 신체적/정신적 속박이나 채무관계에 의한 강제노동 등에 관하여는 거래업체(하위 협력사)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지 않아야 합니다.

다. 차별 및 괴롭힘 금지

협력사는 임직원의 채용, 승진, 교육, 임금, 복리후생 제도 등 고용에 관한 대우에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협력사는 직원에 대한 일체의 비인도적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라. 임금 및 복리후생 제공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법령 및 제도를 준수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임금은 정해진 날짜에 지급해야 하며, 급여명세서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임직원에게 쾌적한 업무환경을 제공하며,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법령 및 제도에서 규정하는 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마. 근로시간 관리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고, 불가피한 연장근무가 발생하는 경우 정당한 보상을 제공해야 하며, 임직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바. 인도적 대우

4. 노동/인권

협력사는 임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근로시간 외 불필요한 업무지시를 자제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사전에 고지하며, 자발적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직장 괴롭힘을 금지해야 하며, 직장 괴롭힘의 피해 임직원 및 가해 임직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사. 결사의 자유 보장

협력사는 본 협력사 행동규범이 적용되는 국가의 노동관계법을 존중하며, 모든 임직원의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며, 정당한 교섭단체 설립과 운영을 허용해야 합니다.

아. 윤리적인 채용

협력사는 직원의 신원확인 서류(신분증, 여권, 운전 면허증 등)를 보관, 폐기, 은닉, 몰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근로자가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여서는 안 되고, 고용을 명분으로 한 어떠한 유형의 수수료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협력사는 모든 근로자가 근로조건에 대한 서면통지를 받도록 하거나 근로조건을 설명해야 합니다.

5. 안전/보건

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안전보건 관련 법령 및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사업 운영에 필요한 모든 안전보건 관련 인허가를 취득·유지하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³을 운영해야 합니다.

나. 기계·기구·설비의 안전 관리

협력사는 사업장 내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안전성을 정기적으로 점검, 평가하고,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장치, 방호벽, 긴급장치 등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임직원 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 보호구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 비상상황 대응

협력사는 비상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매뉴얼을 갖추고, 대응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협력사는 비상상황 발생 시 탈출로, 화재 감지기·경보기, 소방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라. 사고 관리

협력사는 산업재해 또는 질병 발생 현황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협력사는 산업재해 또는 중대한 질병 발생 시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그 발생원인을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마. 안전 진단

협력사는 작업공간의 안전 위험성을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기반으로 임직원에게 작업공간의 사고위험 및 유해인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³ ISO45001, KOSHA18001 표준 등(사업주의 자율방침을 기반으로 안전보건경영 원칙을 제정하며, 이를 기반으로 계획 수립, 실행, 점검 및 평가 활동을 수행하여 안전보건 체계를 점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써, 국제적으로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ISO45001, 한국형으로는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개발한 KOSHA18001이 있음

5. 안전/보건

바. 보건 관리

협력사는 임직원에게 휴게공간, 화장실, 식당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건강검진 법령에 따라 임직원을 대상으로 일반건강검진 또는 특수건강검진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사. 수급인(Contractor)의 안전 및 보건

협력사는 수급인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 동안에는 수급인의 안전 및 보건의 적절히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6. 경영시스템

가. 기업 성명서 공시

협력사는 본 행동규범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지속가능경영 이행 의지를 대·내외에 전파하고, 사내에 공유해야 합니다.

나. 담당자 선임

협력사는 지속가능성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 및 지속가능경영 활동 계획 수립과 이행현황을 감독하는 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다. 리스크 점검

협력사는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윤리, 환경, 노동/인권, 안전/보건 분야의 리스크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고, 중대한 리스크를 발견한 경우, 해당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라. 교육 및 소통

협력사는 본 행동규범에서 제시하는 사항과 본 행동규범 관련 법령 및 제도에서 다루는 사항을 임직원에게 교육해야 하고, 협력사는 본 행동규범에서 제시하는 사항에 대한 추진계획 및 이행성과 등을 임직원에게 공유해야 합니다.

마. 정보 관리

협력사는 윤리, 환경, 노동/인권, 안전/보건 분야의 현황 및 리스크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바. 고충처리 제도 운영

협력사는 고충처리 제도를 운영해야 하며 협력사는 임직원이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불합리한 조치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해야 합니다.

사. 구제수단 마련

6. 경영시스템

협력사는 사업활동으로 공급망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초래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적절한 구제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 거래업체(하위 협력사) 관리

협력사는 제품 혹은 서비스를 기획, 설계, 판매, 제조하는데 있어 계약을 맺은 거래업체(하위 협력사) 등 공급망 참여 기업 전반에서 윤리, 환경, 노동/인권, 안전/보건 요소를 관리하도록 권장해야 하며, 거래업체(하위 협력사) 등 공급망 참여 기업이 윤리, 환경, 노동/인권, 안전/보건 분야의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거래업체(하위 협력사) 등 해당 공급망 참여 기업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유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자. 규범 준수

협력사는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행동규범 준수 여부에 대해 대성화스너 또는 대성화스너가 지정한 제 3자가 진행하는 서면점검 또는 현장방문 시 행동규범 준수 여부 및 이행 수준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본 행동규범의 준수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적절한 문서를 작성·관리⁴ 해야 하며, 확인된 결함이나 위반 사항을 개선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 및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⁴ 적절한 문서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에 따라 작성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의 공표)에 따라 작성한 산업재해 및 질병발생 기록',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 규칙의 작성 신고)에 따라 작성된 취업규칙',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에 따라 작성한 임금액 등에 관한 사항' 외 윤리헌장 준수 동의서, 비상상황 매뉴얼, 근로시간 기록 일지, 작업환경 측정 결과 등 본 행동규범의 요구사항과 관련되어 있거나, 이행수준 평가 시 지표별 답변근거로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의미함

7. 공급망 실사

- ① 협력사는 국내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협력사의 공급망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위험을 확인 및 평가하고, 이러한 위험이 어떻게 완화 및 어리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 ② 협력사는 OECD 실사 가이드라인(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Business Conduct)에서 제시하고 있는 6단계의 실사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 책임경영 시행을 위한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이러한 정책을 회사의 관리감독 시스템 속으로 포섭
 - 사업활동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실질적·잠재적 리스크)을 확인하고 평가
 - 부정적 영향을 중단, 예방, 완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 부정적 영향을 확인, 예방, 경감시키기 위한 조치의 이행 실태와 결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 실사와 관련된 정책, 절차, 행위들에 관한 정보를 외부와 공유하며 소통
 - 부정적 영향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경우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제공하거나 이러한 수단이 타인에 의해 제공될 때 이에 협조
-